

제 2 장 거주자 관리

제5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1항 노인복지시설 시설기준에 의거 해당 시장, 군수 승인을 받아 허가 받은 97명을 정원으로 한다.

2. 모집방법

: 지자체의 추천 및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광고, 프랑카드 게첨,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6조(입소대상)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2.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자

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자

4. 장기요양등급인정서를 받은자 중 시설급여로 인정된 자

5. 2008년 6월 30일 이전 입소자 중 3등급 및 등급제외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원할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계속 입소할 수 있다.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입소정원의 5%이내 가(假)정원 운영에 따른 특례 입소자(시설급여 대상자)는 입소일로부터 1회 90일까지 급여제공이 가능하며, 장기입원이 지속될 경우 연간 180일까지 급여제공 가능

제7조(입소절차)

1. 전 6조에 명시하는 입소 대상자의 신청에 의한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등급부터 치매5등급까지 시설입소등급을 받은 후 보호자가 신청을 하여 입소한다.

3.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시군구의 승인을 받은 후 입소시킨다.

제8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① 시설 입소시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으로 한다.

② 시설 입소 후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 제21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재판정시 등급제외자로 선정될 경우 재계약 없이 퇴소하여야 한다.

④ 단, 2008년 6월 30일 이전 입소자 중 3등급 및 등급제외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원할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계속 입소할 수 있다.

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수납 한도액 범위내에서 수납한다. *(별표1)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와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일체 받지 아니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제10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과 동일하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1)권리

-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2)의무

- ①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용을 이행 합니다.
- ② 보호자는 입소계약과 동시에 입소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규정을 준수 합니다.
- ③ 입소자의 질환 여부에 따라 적응기간 및 심신안정 기간을 위해 입소 후 방문은 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 ④ 보호자는 입소자의 입소 후 면회 및 외출·외박 시 면회일지와 외출·외박 신청서 기록과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면회는 프로그램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 ⑤ 보호자는 다른 입소자들에게 말이나 행동에 유의하며 무례한 행동으로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 ⑥ 입소자에게 필요한 물건 및 음식, 약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⑦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합니다.

⑧ 기타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있어 불편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6. 계약의 해제

- ① 본인 및 보호자가 퇴소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재판정결과 등급제외자 판정을 받을 경우 계약만료일 이후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 된다.
- ③ 2008년 6월 30일 이전 입소자 중 3등급 및 등급제외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원할 경우 등급에 관계없이 계속 입소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본인부담요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 5.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6. 상기 1,2항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시설에 제출하여 상호 협의하여 비용을 변경한다.

7. 당월 이용료의 납부 방법은 통장계좌이체로 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 ① 본 시설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진행한다.
- ② 국민기초수급대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장기요양보험대상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
 - 국민기초수급대상자는 비급여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불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보험대상자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상급 침실료와 이·미용에 따른 비용은 무료로 한다.
- ⑤ 직원 가족의 비급여 할인은 복리후생차원에서 가능하다.
- ⑥ 서비스 내용은 *(별표2)를 참고한다.

제11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

: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하는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3. 감염으로 인한 격리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감염으로 인한 격리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 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② 감염으로 인하여 격리치료 중 병원 외료진료 또는 입원시 비용은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2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1. 입소자가 시설에 설치한 비품을 자의와 고의로 파손하였을 경우 보호자는 그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실수로 파손을 할 경우는 제외한다.
2. 입소자가 타 어르신 물품을 파손 시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3. 외부·외출시 시설의료기구 이용이 가능하며 파손 시에는 배상한다.
4. 시설에서 사용하는 개인 물품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어두어야 한다.
5. 아래의 위험물품의 반입 및 소지를 제한한다.
 - ① 본인 및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예 : 칼 등 도검류, 송곳, 총, 공구류 등)
 - ② 인화성 물품 (예 : 성냥, 라이터 등)
 - ③ 마약류 등 불법의약품

제13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 ② 입소자가 보호자의 동의와 보호자의 책임하에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14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촉탁의사)

① 협약 의료기관의 촉탁의사는 1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50명 이하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촉탁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촉탁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력병원 및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5. 정기건강검진

- ① 입소어르신은 년 1회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 ② 매월 입소어르신 구강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건강검진에 결과가 좋지 않은 입소어르신의 경우 합당한 진료 및 치료를 보호자와의 상의를 통해 실시한다.

6. 감염 또는 감염위험자에 관한 사항

① 감염 또는 감염위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 즉시 격리조치하고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감염 대응 지침에 따라 보건소 및 관계기관에 보고 및 신고 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병원외래진료, 병원입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재활치료)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2항에 의하여

- 1.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 촉탁의사, 공중보건과의 연계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2. 작업치료는 사회복지사의 주간 프로그램에 의하여 다양하게 실시한다.
- 3. ROM(혈관성치매노인의 관절운동)운동(훈련)은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 책임하에 손가락훈련, 손목운동기(전관 재외회전, 수관절국곡신전) 팔운동기(견관절회전, 만능) 다리운동기(자전거)를 이용하여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보조장비(보행기, 지팡이 등)를 이용한 보행훈련, 오락프로그램을 통한 율동 동작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4. ADL(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치매초기노인대상)훈련은 사회복지사 책임하에 기억하기(시간, 절기), 익히기(숫자, 돈계산), 훈련(배변, 보행), 관리하기(의류, 물품), 구분하기(직원, 동료)등으로 주간프로그램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 5. LADL(광범위한 일상생활 거동능력) 훈련은 담당직원 입회하에 시장보기, 전화걸기, 세탁 및 정돈, 대중교통이용, 약복용, 은행업무 등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동반

외출프로그램에 포함 실시한다.

6. 개인별 증상에 따라 회복과 지지를 위한 계획을 사례검토회의를 통하여 병행 실시한다.
7. 일상회화가 부족한 거주자에 대하여 상담을 통하여 자주 말 걸기, 장기자랑, 자기소개, 가족이야기하기 등 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어증이 있는 경우 관심을 가지고 신문이나 기타 글씨를 소리내어 읽기, 헤드폰 등에 의해 옛날 노래를 들으면 따라 노래하도록 하는 등 말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한다.
8. 신체장애의 정도에 따라 휠체어,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지팡이 등을 이용하여 거주자의 자립을 배려해야 하며 사용요령을 숙달시킨다.

제16조(급식위생관리)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2항에 의하여

1. 전염성 질환, 화농성 창상 등이 있는 자는 거주자의 식사를 조리 하여서는 안된다.
2.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는 수도법 및 먹는물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 검사를 받는다.
3. 거주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거주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규정에 의거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아 보건증을 제시한다.
5. 식단표에 의거 부식 구매시 식품검수를 병행한다.
6. 음용수는 끓인 물을 제공한다.
7. 취사기구 또는 식기류는 매일 소독하여 사용해야 하며, 하절기 또는 전염성 병원균 발생 경보시에는 1일 2~3회 증가하여 전기소독기, 열, 일광건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독해야 한다.
8. 식품은 보관 적정량과 보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9. 날 음식, 찬 음식, 생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더운 음식은 덥게, 찬 음식은 차게 해서 제공한다.
11. 거주자 면회시 음식물은 즉시 취사하여야 하나 변질 또는 질병예방을 위해 음식물 반입 또는 취식을 금지할 수 있다.(반입 음식물은 역학조사를 위해 면회일지에 기록유지)
12. 거동불편자는 식사를 보조하며, 출타 및 기타 이유로 식사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거주자는 식사를 보관하여 복귀시 식사 조치한다.
13. 식사를 못하거나 의사처방이 있을시, 죽 또는 기타 유사한 영양식을 제공해야 한다.
14. 간식은 과일 또는 기타 간식을 포함하여 식단표 작성시 포함하여 시행한다.
15. 거주자의 식사시에는 모든 직원이 참여하여 식사보조, 식사관찰, 투약 등을 실시한다.

16. 시설의 급식위원회를 운영 관리한다.

제17조(위생관리)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2항에 의하여

1. 해충구제(파리, 모기, 바퀴벌레)를 위하여 주기적인 방역을 실시하되 하절기에는 증가한다.
2. 전염성 병원균 예방을 위하여 식사 전, 요변 후, 외출 후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식당 앞, 화장실에 손 세척수 및 수건을 준비하여 스스로 위생관리를 하도록 교육과 감독을 병행한다.
3. 월 1회 이.미용을 실시하여 단정한 두발을 유지한다.
4. 목욕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하절기 또는 땀이 났을 때에는 수시 실시한다.
5. 구강위생을 위해 양치질은 매일 2~3회 실시하며, 이가 없는 거주자는 거즈봉, 가그린 등으로 구강 내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6. 세탁은 피복과 침구류로 구분하여 피복은 목욕 시 속옷, 양말을 포함하여 주 2~3회 실시하고 침구류는 월 1회 이상 세탁 및 주 단위 일관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옷장 등에 나프탈린을 이용 방충활동을 병행한다.
7. 화장실, 목욕탕, 주방 등은 1일 1~2회 이상 물청소, 크레졸 및 락스소독으로 청결을 유지한다.
8. 세면 및 세족은 1일 2회 이상 실시하며, 손발톱은 주1회, 면도는 매일 실시하여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18조(후생복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2항에 의하여

1. 거주자의 개별상담은 정기적으로 분기 1회, 또는 병원 입.퇴원시, 이상 행동시 수시로 실시하여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한다.
2. 사례검토회의는 분기별 개인별로 개별사례를 의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
3. 직원 및 시설 거주자는 존댓말, 인사 등 올바른 예절로 상호 존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원은 정확한 이름과 어르신 칭호, 존댓말로 먼저 인사하며, 거주자도 직원에 대한 언어로 상호 존중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한다.
4. 언어사용 및 생활보조 활동상태는 월 단위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5. 거주자는 자유롭게 전화, 서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문맹자에게는 전화를 걸어 주고 편지도 대필해 주어 개인의사소통을 돕는다.
6. 거주자 면회는 원칙적으로 일과시간에 실시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국.공휴일에도 당직근무자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사생활 배려를 위해 직원의 입회는 가급적 제한하며 추가적으로 면회자 상담을 실시한다.

7. 거주자는 자신의 결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고, 종교, 문화, 투 표, 경로연금, 교통비 사용, 기타 활동요구시 적절한 지원을 한다.
8. 거주자의 사생활 확보를 위해 개인 신상 등은 공문서에 의해서만 제출되며, 신상 기록카드, 상담일지, 사례검토 회의록 등을 보안을 유지한다.
9. 거주자는 개인적으로 지역의 편의시설을 개인 외출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마음이 맞는 거주자와 단체로도 이용할 수 있다.
10. 거주자는 노인의 날 행사, 법인 창립기념일 기타 지역사회행사에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고, 수송수단과 안전관리를 위해 직원을 동반해야한다.
11. 개인사물함 관리를 위해 옷장 등을 배려하며, 관리하지 못하는 거주자는 담당 직원이 수시 정리한다.
12. 거주자의 여가선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되 작품들을 진열 또는 게시하여 성취감을 유지한다.

제19조(안전관리)

1. 화재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소방계획에 포함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2.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차량, 화재, 가스등으로 구분 대인 및 대물보상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3. 안전교육은 계절 또는 월별로 구분하여 교사, 낙뢰, 태풍, 호우, 붕괴, 낙상, 동상, 전기감전, 담뱃불, 모닥불에 의한 화재 등을 위주로 직원 및 거주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4. 담당부서별로 주간안전점검을 장비사용전후 점검하고, 야간에는 당직자가 가스, 전기, 건물, 연료보관, 소화기우기 기타 보안 점검을 실시하며 미비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5. 월 단위로 방화관리자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연간 1~2회 이상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기, 가스, 소화설비 등을 점검한다.
6. 자연재해 즉 호우, 대설, 태풍 경보 시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7. 거동불편자의 대피를 위해 거주자 거실별, 담당직원별 팀 단위로 안전대비 요령을 교육하고 시행토록 한다.
8. 기동장비는 사용전후 확인 및 정비한다.
9. 직원의 위험에 대피하기 위해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10. 거주자 출타 시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연락방법 등을 사전교육하고 복귀 시까지 주목한다.(차량이동포함)

제20조(사망자 처리)

1. 사망자의 장례를 행할 연고자가 있을 때에는 유품, 금전, 영정, 기타 필요한 내용

의 사체 인수서를 작성 날인 후 인계한다.

2. 사망자의 장례를 행할 연고자가 없을 경우 시설에서 장례를 행하여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사망진단서 발급

나. 사망 및 매장신고

다. 염습, 입관

라. 영정, 제상준비(제물, 향, 초, 기타)

마. 잔디, 비석준비

바. 운구 및 하관 후 봉분작업

사. 사진촬영 후 보관

3. 장례 후 연고자가 나타날 때 모든 사항 설명 후 인계한다.

4. 가.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잔여 금품은 직계 혈족등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나. 위 가.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민법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다. 무연고 입소자가 사망 전 유류금품에 대한 기부의사를 표시할 경우 시설수입금(후원금 성격)으로 처리하여 시설입소자를 위한 용도로 사용가능하며 사용내역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단 시설운영비, 기능보강비 등 시설운동을 위한 비용으로는 사용불가하다.

5. 거주자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는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직원 또는 종교단체,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편안한 운명이 되도록 한다.

6. 거주어르신의 사용 후 남은 재산 및 금전은 퇴소 시 보호자에게 인계토록 한다.

제21조(이용자 회의)

1. 이용자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시설장 주관 하에 직원 및 거주자 보호자가 참석하여 실시한다.

2. 이용자 회의는 입소자의 상황, 입원환자의 치료진행상태, 식단 및 간식제공 기타 프로그램, 서비스 내용 등을 설명하고, 불편사항과 개인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한다.

3. 입소자는 가족 등을 참석시켜 운영간담회를 별도 운영 개최한다.

제22조(시설환경)

1. 건물 외관의 파손부분과 도색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깨끗하게 관리한다.

2. 정원 관리를 위해조경수는 전지작업, 해충구제약 살포, 잔디의 잡초제거 및 잔디깎이 등을 수시로 실시한다.

3. 시설내부는 온화하며 안정감 있는 색상으로 도색하며 퇴색, 파손된 부분은 즉시 정비하며 쾌적한 분위기를 위해 액자, 게시판 등을 적절히 배치한다.
4. 거실과 복도, 화장실, 기타 통로상의 문턱을 없애고 경사로를 완만하게 하여 낙상방지 및 휠체어 이용을 편리하게 한다.
5. 거실의 커튼은 청결을 유지하고 도배는 훼손 또는 탈색 즉시 정비한다.
6. 장판은 훼손즉시 교체 또는 정비한다.
7. 통로, 화장실, 목욕탕에는 지지대를 이용하여 보행에 도움이 되도록 관리 유지한다.
8. 실내조명을 위해 어두운 지역에는 주간이라도 점등하고, 야간에는 소등전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9. 시설외부에 설치한 입간판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깨끗한 상태로 유지한다.
10. 시설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그 위생 관리에 유의한다.
11. 불쾌감을 주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화장실, 복도, 거실에 방향제를 사용하며, 화장실, 주방에 환풍기를 사용하고, 화장실에 나프탈린을 매달아 놓는 등 악취제거를 위해 노력한다.

제23조(입소자 생활규범 소개)

1. 시설현황

- 가. 법 인 : 사회복지법인 해남 희망원 (대표이사 : 김종호)
- 나. 시설명 : 해남노인요양센터 (원장 : 임채운)
- 다. 위 치 :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83-69

2. 연혁

- 가. 1953. 5. 3 : 사회복지시설 희망원 설립
- 나. 1983. 4. 25 : 사회복지법인 희망원 인가(보사 제594호)
- 다. 1999. 4. 7 : 공사착공 (총 예산 15억 5천만원)
- 라. 2000. 1. 20 : 공사완료 - 1,440.8㎡(437평)
- 마. 2000. 11. 18 : 노인의료복지시설 개설 신고 (해남군수 제1호 - 입소정원:60명)
- 바. 2000. 12. 1 : 개원
- 사. 2005. 2. 28 : 다목적실 및 와상 어르신 입원실 증축 - 570.15㎡
(입소정원 77명 변경)
- 아. 2008. 1. 1 : 해남노인요양센터로 시설명 변경
- 자. 2008. 6. 30 : 장기요양기관 지정
- 차. 2008. 6. 30 : 신관 증축 - 792.25㎡ (입소정원 108명 변경)
- 카. 2009. 8. 21 : 입소정원 99명 변경
- 타. 2016. 1. 29 : 입소정원 97명 변경

3. 시설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1, 2등급 및 예외로 인정된 3, 4, 5등급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자

4. 거주자의 권리

가. 본인 희망에 따라 시설입소여부 결정.

나. 시설은 내 집과 같이 자유롭게 이용.

1) 1~4명 단위 거실사용.

2) 기타시설 공동사용.

3) 시설 내부현황

구분	실수	구분	실수	구분	실수	구분	실수
원 장 실	1	다목적실(강당)	1	요양보호사실	3	세 탁 실	1
사무국장실	1	가족면회실	1	주 방	1	기 계 실	1
사 무 실	1	직원휴게실	1	식 당	1	비상재해대비시설	1
영 양 사 실	1	특 별 침 실	1	황토방(사우나실)	1	창 고	2
물리치료실	1	린 넨 실	4	화 장 실	31	기 타	12
상 담 실	2	거 실	42	목 욕 실	1		
사회복지사실	1	이·미용 봉사실	1	샤 워 실	3		
간호근무실	1	자원봉사자실	1	탈 의 실	4		

다. 생활규범

1) 거주자는 내 부모와 같이 모시겠습니다.

가) 거동 불편자 생활보조 및 안내

나) 싸우거나 욕하지 않고, 상호 존댓말을 사용한다.

다) 상호간 예절을 지킨다.(좌석, 인사 등)

라) 직원은 거주자를 부모처럼 상호 신뢰하고, 올바른 예절을 갖춘다.

(상호 존댓말 존중)

2) 도박행위는 하지 않는다.

3) 음주는 개인주량을 고려 직원 통제 하에 실시한다.

4) 외출, 외박은 보고 후 시행한다.

5) 흡연은 건강을 고려하여 양을 줄이고, 화재안전을 위해 흡연구역을 준수한다.

6)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가) 목욕, 면도, 양치 세면 및 세족

나) 끓인 물을 취식한다.

다) 화장실 이용 후, 식사 전, 외출복귀시 손을 깨끗이 씻는다.

라) 제공되지 않는 음식물은 먹지 않는다.(생식 및 부패된 음식물)

라. 서비스 제공

- 1) 영양식단 및 간식제공
- 2) 거동불편자 목욕 및 활동 보조
- 3) 주기적인 이·미용 및 세탁
- 4) 병원치료 및 물리치료, 재활치료
- 가) ROM, ADL, IADL
- 나) 일상회화 부족자 배려(말 걸기, 가족소개, 장기자랑 등)
- 5) 각종 프로그램 참여로 즐거운 생활보장
- 6) 전화 및 서신교환의 자유 및 보조
- 7) 분기별 사례검토 후 자립을 위한 조치

마. 거주자의 애로사항 및 불편해소

- 1) 입소시 개별상담(건강, 시설이용 욕구 등)
- 2) 주기적인 상담 및 거주자 간담회
- 3) 평상시 느끼는 불편사항 즉시 해소

바. 자기결정에 의한 참여활동 및 사생활 보장

- 1) 금전은 본인이 관리하고, 본인의사에 따라 사용한다.
(단, 거동 불편자는 직원이 대리한다.)
- 2) 활동프로그램의 참여 여부는 본인이 결정한다. (단, 교육 및 치료활동 제외)
- 3) 거주자는 종교, 문화, 투표권행사, 활동의 지원 등은 본인이 결정한다.
- 4) 거주자의 개인 정보유출은 공문에 의해서만 응한다.

사. 입소자 및 방 동료 소개

제24조(퇴소)

1. 시설거주자의 퇴소는 본인요청에 의거 보호자 면담 후 조치하며 보호의무자 퇴소신청서에 의하여 퇴소한다.
2. 보호의무자가 거부하는 퇴소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지역인사나 종교단체 등에서 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서약이 있을시 조치할 수 있다.
3. 사망시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행정 조치한다.
4. 입소자 본인부담금이 1년 이상 미납시 입수비용을 납부토록 5회이상 통지하여도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행정부서의 승인을 받아 퇴소조치 하도록 한다.

제25조(노인학대 및 인권침해방지)

1. 거주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건의함과 진정함을 설치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 교육과 필기구 등을 비치한다.
2. 진정함은 매일 점검하여 내용이 있을 시 즉각 군청 및 인권위원회 (1577-1389)에 보고하며 건의내용을 즉시 조치하고 결과를 정식으로 통보한다.

3. 거주자의 학대 방지를 위해 반기 1회 이상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수치심이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어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4. 어떤 이유로든 노인을 협박, 무시, 조롱과 욕설을 하지 않아야 한다.
5. 의료적 필요성을 제외하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제한이나 구속을 가해서는 안 되며,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6. 추가적인 노인학대 및 인권침해 방지에 관해서 별첨 노인 인권 보호 지침을 첨부하여 노인학대 및 인권 침해 방지에 노력한다. <별첨-노인인권보호지침>

-별표1-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요양보호사 인력 2.1 : 1 적용)

구분	1등급	2등급	3,4,5 등급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 (일)	84,240	78,150	73,800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 (월)	2,527,200	2,344,500	2,214,000
본인부담금 (8%)	202,170	187,560	177,120
본인부담금 (12%)	303,260	281,340	265,680
본인부담금 (20%)	505,440	468,900	442,800
식재료비(비급여)	1일 6,600원(간식포함) × 30일 = 198,000원		
본인부담금 (8%)	400,170	385,560	375,120
본인부담금 (12%)	501,260	479,340	463,680
본인부담금 (20%)	703,440	666,900	640,800
촉탁의 진료비 (월2회)	금액	초진	재진
본인부담금 (8%)	초진비용 (17,610) 재진비용 (12,590)	1,480	1,000
본인부담금 (12%)		2,110	1,510
본인부담금 (20%)		3,520	2,510
① 노인요양시설 : 국민건강보험공단사정으로인하여등급별금액은변동이있을수 있습니다. 2024년01월분청구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본인일일부담금 + 촉탁의진료비합산된금액으로 청구예정입니다. ②식재료비 : 하루 (1식 2,200원 x 3번) 6,600원 이며 병원 입원 및 외박시 일일 계산됨을 알려 드립니다. ③촉탁의진료비 : 촉탁의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에 따라 금액이 적용되며 현재 시설에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께서는 재진비용으로 적용됩니다			